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26
----------	-------

발의연월일 : 2025. 11. 13.

발 의 자 : 모경중 · 이재강 · 권향엽
김현정 · 김남근 · 이주희
이병진 · 김준혁 · 백승아
최민희 · 김 현 · 허종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조직 · 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됨.

그런데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도 현행법의 입법목적임에도 주민대표기구의 성격을 가진 주민자치회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현행법에 주민자치회를 명문화하여 읍 · 면 · 동 단위에서의 풀뿌리지방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장 신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장(제212조부터 제21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장 주민자치회

제212조(주민자치회의 목적 및 설치) ①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 중심의 지역문제 해결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치활동을 수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읍·면·동 단위에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13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2. 자치 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3. 주민총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읍·면·동 기구 운영

4.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사무에 관한 협의
5.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214조(정치적 중립 및 권한 남용 금지) 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5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주민 중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성별·연령·직업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자격·임기·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6조(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및 지원) ① 주민자치회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고유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은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관련 시설 및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3장 주민자치회</u> <u>제212조(주민자치회의 목적 및 설치) ①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 중심의 지역문제 해결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치활동을 수행한다.</u> <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읍·면·동 단위에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u> <u>제213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u> <u>1.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u> <u>2. 자치 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u>
<u><신 설></u>	

<신 설>

<신 설>

3. 주민총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읍·면·동 기구 운영

4.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사

무에 관한 협의

5.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하

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규

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

항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

를 주민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214조(정치적 중립 및 권한 남

용 금지) 주민자치회는 그 명

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

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

서는 아니되며, 권한을 남용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215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신 설>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주민 중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성별·연령·직업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자격·임기·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6조(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및

지원) ① 주민자치회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고유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은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관련 시설 및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